

실지는 終結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案件이 원만하게 通過되어야 今年을 보내면서 끝을 마치기 때문에 지금 局長에게 더 答辯을 들어왔자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왕 議案番號 1036號는 改正條例案이고 또 議案番號 1037號는 運營條例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提議합니다.

○委員長 崔 浩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議案番號 第1036號 서울特別市立婦女保護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議案番號 第1037號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案番號 第1036號와 第1037號의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通過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무의무탁한 부랑부녀의 일시 수용 보호”를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보호여성의 일시보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보호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윤락행위 상습자와 환경 또는 정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의 일시보호
2. 부랑부녀자의 일시보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조중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32分)

○委員長 崔 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議案番號 第1180號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家庭福祉局長의 本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崔 浩 委員長님, 그리고 保健社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저희 家庭福祉局 行政에 대한 委員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提案說明드리게 될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현재 1人 1個月當 2,000원인 幼兒保育料를 5,000원으로 3,000원 引上하고, 1人 1個月當 3,000원인 技術教育受講料를 7,000원으로 4,000원 引上하며, 1人 1個月當 5,000원인 生活文化教育受講料를 7,000원으로 2,000원 引上 調整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婦女福祉館은 低所得層 女性과 一般女性의 經